

2022. 6. 9(목) 16:10~

제6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안건〉

1. 「교양학사트랙운영규정」 제정(교양교육지원센터)
2. 「교양학사트랙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
 -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 제정·개정·폐지 사유서			
규 정 명	「교양학사트랙 운영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양대학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 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교양학사트랙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관련근거			
기대효과	폭넓은 교양교육과 교양교육과정의 체계적 이수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인재양성		
주요내용	교양학사트랙 운영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첨 부	「교양학사트랙운영규정」 제정안		

교양학사트랙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양학사트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양학사트랙이라 함은 교양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양학사학위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양학사트랙 개설 및 폐지) ①교양학사트랙은 공공서비스트랙, 다문화트랙, 디지털기반융복합트랙, 지역문화콘텐츠트랙으로 개설한다.

②교양학사트랙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은 편성하지 않는다.

③교양학사트랙과정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신설·폐지한다.

제4조(트랙주임교수) 교양학사트랙 운영에 관한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트랙주임교수를 두며, 트랙주임교수는 교양대학 소속교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교양학사트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트랙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이수학점) ①교양학사트랙별 이수학점은 교양필수 14학점, 트랙별 교과목 27학점을 포함하여 41학점 이상이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필수 11학점, 트랙별 교과목 27학점을 포함하여 3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주전공 교과목과 교양학사트랙 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양학사트랙 이수과 교양교육과정 이수는 별개로 한다.

제7조(신청자격) 교양학사트랙 신청 자격은 소속 학과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하며, 다만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신청 및 승인) ①교양학사트랙 이수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복수전공신청서(교양학사트랙)’를 트랙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양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양학사트랙 이수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양대학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교양학사트랙 이수자는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인원) 교양학사트랙 이수자의 선발인원은 전공 운영의 특성상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수포기와 학점인정) ①교양학사트랙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복수전공포기신청서(교양학사트랙)’를 교양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양학사트랙 이수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학위수여) 교양학사트랙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복수전공으로 교양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개정·폐지 사유서

규 정 명	「우석대학교 학칙」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교양대학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 회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		
제정·개정 폐지사유	교양학사트랙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관련근거			
기대효과	심화 교양교육 실현		
주요내용	- 다중전공 중 교양학사트랙 신설 - 교양학사 학위명 명시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첨 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48조(다중전공) 6. <신설>	제48조(다중전공) 6. 교양학사트랙 : ①교양대학에서 개설 운영하는 복수학위과정으로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교양학사 복수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4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필수를 포함하여 3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양학사트랙은 [별표 3]과 같다. ④ 교양학사트랙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20%;">수여학위</th><th style="width: 80%;">학 과 및 전 공</th></tr> <tr> <td></td><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tr> </table>	수여학위	학 과 및 전 공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20%;">수여학위</th><th style="width: 80%;">학 과 및 전 공</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양학사</td><td>공공서비스트랙, 다문화트랙, 디지털기반융복합트랙, 지역문화콘텐츠트랙</td></tr> </table>	수여학위	학 과 및 전 공	교양학사	공공서비스트랙, 다문화트랙, 디지털기반융복합트랙, 지역문화콘텐츠트랙
수여학위	학 과 및 전 공								
	<신설>								
수여학위	학 과 및 전 공								
교양학사	공공서비스트랙, 다문화트랙, 디지털기반융복합트랙, 지역문화콘텐츠트랙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우석대학교 학칙

제4절 다중전공 등 (개정 2020.2.28.)

제48조(다중전공) ①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다른 전공(이하 “다중전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각 별도로 정한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복수전공 : 2개 이상의 전공
 2.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각 학과(부)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신설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3.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참여하여 각 학과(부)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4. 전공트랙 : 1개 이상의 학과(부)에서 학생의 진로와 취업분야 등에 따라 트랙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전공
 5. 학생자율설계전공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다중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정해진 학위를 수여한다.
③ 다중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9.3.1., 2020.2.28.]

제49조(부전공) ①전공학과(부) 교과목 이외의 어느 특정학과(부)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이수를 인정한다. 다만, 교직이수자는 3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2(특성화트랙) ①취업 및 창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사회에 적합한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트랙을 운영할 수 있다.

②특성화트랙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2.28.]

규정 제정·개정·폐지 사유서			
규 정 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교양대학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 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교양학사트랙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학사운영규정 개정		
관련근거			
기대효과	심화 교양교육 실현		
주요내용	교양학사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에 관한 내용 명시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첨 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학사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이수학점) ③ <u><신설></u>	제85조(이수학점) ③ <u>교양학사는 교양필수 14학점을 포함하여 4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교양필수 11학점을 포함하여 3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u>
제87조(중도 포기과 학점인정) ②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중도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 부전공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u>인정하지 않는다.</u>	제87조(중도 포기과 학점인정) ②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중도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 부전공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 <u>와 교양학사 이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u>
	<u>부 칙</u>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장 복수전공, 부전공, 평생교육사 과정, 현장실습학기제 및 창업실습학점제, 특성화 트랙 등

제1절 복수전공

제80조(복수전공) 학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당시의 전공(제1전공)과 다른 학과(부)의 전공(제2전공)을, 학부로 입학한 재학생은 학부내의 복수의 전공 또는 학부내의 전공(제1전공)과 학부외의 다른 전공(제2전공)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다.

제81조(선발범위 및 인원) ①복수전공은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및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학과(부)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개정 2018.4.6., 2021.1.27.)

②복수전공 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100% 범위 내로 한다. 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지원자의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

③제2항의 경우에 복수전공의 선발인원은 시설의 수용 능력, 학과(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82조(이수신청 시기)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3차 학기 진급대상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의 이수신청 시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4, 2012.2.2., 2015.9.17.)

제83조(신청자격) ①<삭제 2015.9.17.>

②사범대학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한다.

제84조(신청절차) ①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한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학과(부)장은 제81조 제2항의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복수전공의 이수 개시 14일 전에 그 명단을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이수학점) ①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부)의 전공필수(학부공통)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관련 전공자가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또는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할 경우에는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중복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4., 2011.2.25., 2011.11.21.)

②학과(부)장이 학업이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과목의 이수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4.)

제86조(수강지도) ①복수전공 이수자의 수강지도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부)장이 한다.

②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중도 포기과 학점인정) ①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포기신청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중도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에 부전공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2.2.)

제88조(실습비 납부) 실험·실습을 요하는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복수전공 학위수여) ①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의 이수를 표시한다.

②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90조(증명서의 발급) 재학 중에도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규정 제정·개정·폐지 사유서			
규 정 명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교양대학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 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교양학사트랙 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근거			
기대효과	교양학사트랙의 체계적인 운영		
주요내용	교양학사트랙 주임교수에 대한 감경시간 명시		
기타사항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관련규정:		
	제·개정 및 폐지 후 조치사항:		
첨 부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2. 감경시간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u><신설></u>,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우영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 PD교수,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특성화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2. 감경시간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u>교양학사트랙주임</u>,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우영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 PD교수,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특성화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 하고,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기본 강의시간(이하“책임 시간”이라 한다)과 전임교원의 학기별 최대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3.4.)

제3조(책임시간 및 강의편성일) ① 교원의 매 학기당 책임시간 및 강의편성일은 교원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2.20., 2010.6.22., 2016.2.24., 2019.3.1.)

1. 교육중심교원 : 12시간, 4일
2. 연구중심교원 : 9시간, 3일
3. 봉사중심교원 : 12시간, 4일
4. 산학협력중심교원 : 9시간, 3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양대학 및 교육대학원 소속 교원,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전 교원의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2016.2.24., 2017.4.19.)

1. 교양대학 및 교육대학원 소속 : 12시간 + 두레공동체 담당과목 (신설 2010.6.22.) (개정 2017.4.19.)
2.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전 교원 : 9시간, <삭 제> (개정 2015.2.26., 2015.9.23., 2016.2.24., 2019.3.1.)

③ 교원의 유형분류 제외대상인 교원의 매 학기당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위원 : 제5조에서 정하는 책임시간
2. 임상교원 : 본교에서 진행하는 학부 이론수업 1강좌로 하되, 양방임상교원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0.6.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임시간은 학년도 통산 기준으로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전공과목을 우선으로 강의하여야 하며, 학과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교양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조문개정 2012.1.1., 2015.2.4.]

제4조(책임시간의 산정) ① 1개 학기동안 매주 1학점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책임시간 1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책임시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4.)

③ 대학원 강의시간 수는 3시간까지 책임시간 수에 산입한다. 다만, 대학원 소속 교원은 6시간까지 산입한다. (개정 2019.9.4.)

④ 계절제 수업(대학원 포함)의 강의시간 수는 책임시간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0.)

⑤ <삭제 2012.1.1.> (신설 2009.10.1.)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진천부총장/산학협력부총장 :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도서관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포함), 혁신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부단장, 평생교육원장, 자율전공대학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라. <삭제 2015.2.4.>

마. <삭제 2015.2.4.>

2. 감경시간

가. 감경 2시간 : 한방병원장, 보육교사교육원장, 어린이집 관리교수, 체육부장, 우석대학교전주한 방문화센터장, 한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자아카데미원장, 신문방송사주간 (개정 2015.2.4., 2015.2.26., 2015.3.31., 2015.9.23., 2016.2.24., 2019.1.8., 2020.2.19.)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우영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공학교육혁신센터 PD교수,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특성화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② <삭제 2012.1.1.> (개정 2006.10.20., 2008.2.20.)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책임시간 조정을 요구한 경우

2.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3. 본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경우

4. 교원이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5. 기타 총장이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2.1.1.> (항 신설 2009.11.16.)

[조문개정 2008.2.20., 2012.1.1.]

제6조(책임시간의 미달) ① 교원이 강의시간이 연간 책임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적평가에 반영한다.

② 학기별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미달된 시간에 대해 초과강의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당해 학기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3.8.2.)

③ 교원재충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교원을 제외한 학기별 강의시간이 없는 교원은 당해학기에 한해 보전수당과 특별학사관리수당, 학생지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3.8.2.) (개정 2014.11.13.)

④ 교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책임시간에 미달되었더라도 책임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2.)

제7조(최대강의시간 제한) ① 전전 학기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하위 10% 교원과 타교출강 교원의 최대강의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강좌의 성격 등에 따라 대체강사를 구할 수 없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0.1.28., 2012.7.26., 2015.2.4., 2016.2.24., 2016.8.29.)

1. 강의평가 하위 10% 교원

가. 일반교원 : 책임시간+6

나. 보직교원(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의 해당 교원) : 책임시간+3

(삭제 2012.1.1. 호 신설 2016.2.24., 개정 2019.9.4.)

2. 타교출강 교원

가. 일반교원 : 책임시간+9

나. 보직교원(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지 다목의 해당 교원) : 책임시간+3

(삭제 2012.1.1. 호 신설 2016.2.24., 개정 2019.9.4.)

3. <삭제 2012.1.1.> (개정 2010.1.28.)

② 제1항의 최대강의시간에는 타교출강 및 대학원 강의시간을 산입한다. 다만, 계절제 강의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10.1. 항 신설 2010.3.3. 삭제 2016.2.24.>

[조문 개정 2008.2.20., 2012.1.1.,]

제8조(시간제 등록생 원격강의에 대한 특례) 시간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원격강의(인터넷 수업)시간은 교원의 책임시간 및 최대강의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15.)